

# 繼續企業報告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에 관한 研究

高 成 孝\*

## 目 次

- I. 序 論
- II. 繼續企業報告에 대한 會計監査基準의 展開過程
- III. 繼續企業報告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 分析
- IV. 結 論

## I. 序 論

會計監査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국면중의 하나는 監査인이 繼續企業으로서 존속여부에 대한 疑問事項을 特記事項으로 기술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會計監査準則에 의하면, 監査인은 繼續企業의 존속여부에 대한 報告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疑問事項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疑問의 解消事項을 검토하여 繼續企業의 存續能力을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判斷과 報告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監査인은 다음의 두 가지 상반적인 要因을 고려해야 하는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실패한 기업에 대해 繼續企業의 報告'를 하지 않음으로써 추후에 제3자에 의한 訴訟이나 法的 規制의 구실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監査인이 繼續企業의 존속여부에 대한 疑問事項을 보고함으로써 被監査人으로부터의 위협이나 감사인교체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1991년 12월에 개정된 會計監査基準은 감사실시과정에서 繼續企業의 존속여부에 중요한 疑問事項을 검토하고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疑問解消에 필요한 제반 經營計劃

\* 濟州大學校 會計學科 教授

1) 繼續企業의 報告라 함은 繼續企業으로서 存續能力에 대한 중요한 疑問事項이 있는 경우 이를 監査報告書에 特記事項으로 기술하여 報告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 실현가능성여부를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經營計劃을 평가한 후에도 기업의 존속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면, 監査人は 의문사항을 監査報告書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繼續企業이 의문시되는 情報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繼續企業의 존속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법(개정 이전의 會計監査基準과 1981년의 美國의 會計監査基準書 No.34<sup>2)</sup>)보다 監査人の 책임범위를 한층 강화시킨 美國의 會計監査基準書(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 : SAS) No.59(1988)<sup>3)</sup>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會計監査基準을 개정하기 이전보다 개정 이후에 監査責任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繼續企業의 존속여부에 대한 判斷과 報告過程에서 많은 정보를 고려하여 報告決定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研究의 目的은 監査人이 繼續企業으로서 존속여부에 대한 判斷 및 報告決定過程에서 繼續企業의 존속여부에 대한 判斷과 報告決定에 필요한 사항들과 繼續企業의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를 분석한다.

繼續企業으로서 존속여부의 검토에 필요한 事項들은 ① 중요한 疑問事項 및 疑問解消事項의 내용, ② 계속기업의 失敗時點, 그리고 ③ 계속기업존속여부의 판단기준이 있는데, 이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를 조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繼續企業으로서 존속여부에 대한 報告決定을 할 때 감사증거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이 있다. 繼續企業의 존속여부에 대해 特記事項으로 기술여부가 被監査人, 投資者와 債權者, 同僚監査人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사인은 이들 利害關係者 상호간 이해관계의 調整과 報告責任은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보고결정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狀況을 설정하여 그 상황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를 규명하고자 한다.

두 가지 狀況은 부적절한 보고결과의 責任에 대한 감사인의 認知態度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被監査會社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 중요한 疑問事項을 特記事項으로 보고했는데 나중에 계속기업으로 존속한 경우의 상황과 특정 被監査會社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 중요한 疑問事項을 特記事項으로 보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의 상황에 대한 인지태도를 조사한다. 다른 두 가지 狀況은 계속기업의 存續能力에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 보고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감사인의 報告責任과 갈등에 대한 인지태도이다. 다시 말하면, 감사인이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는 회사에 대해 特記事項으로 보고할 경우와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해

2) AICPA, The Auditor's Consideration When a Question Arises about an Entity's Continued Existence, SAS No.34, AICPA, New York, (March 1981).

3) AICPA, The Auditor's Consideration of an Entity's Ability to Continue as a Going Concern, SAS No.59, AICPA, New York, (April 1988).

중요한 의문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特記事項으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의 상황에 대한 감사인의 認知態度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研究는 계속기업에 관련된 研究目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우리나라 5개 회계법인에 종사하는 공인회계사 167명에 대해 設問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II. 繼續企業報告에 대한 會計監査基準의 展開過程

繼續企業의 가정은 財務諸表의 作成에 기초가 되는 基本前提 가운데 하나로서, 대부분의 會計處理方法은 한 회사가 영구히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 물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會計處理를 할 때 繼續企業의 가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이러한 가정은 회계에서 사용되는 評價와 配分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資産評價의 기본원칙인 歷史的原價의 적용과 減價償却 節次는 이 가정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만일 중대한 손실로 기업의 清算可能性에 직면하고 있다면, 繼續企業假定에 기초한 傳統會計는 진실한 상태를 결정하고 보고하는데 적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 모든 資産과 負債의 가치는 문제가 되며 純實現可能價值에 의한 清算會計가 더 적절하다. 따라서 監査人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繼續企業報告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繼續企業假定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첫 공표는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Exchange Commision)에 의해 會計連續通牒(Accounting Series Release) NO. 90(1962)으로 나왔다. 會計連續通牒(ASR) NO. 90은 報告日에 해결될 수 없는 회계상 중요성이 있는 去來나 事象에 대한 문제에 대해 條件附 限定意見이 적절한 보고로 보았다. 1962년 이전에, 繼續企業 監査報告의 필요성과 그러한 문제는 監査人 개개인에게 신중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會計連續通牒(ASR) NO. 90에 따라서 美國公認會計士會는 감사절차보고서(Statement on Accounting Procedures: SAP) NO. 33(1963)을 공표하였는데, 財務諸表 공개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불확실성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監査報告에 비정상적 不確實性問題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監査人에게 요청하였다.

「財務諸表의 檢證」이라는 表題로 會計連續通牒(ASR) NO. 115(1970)를 公表했을 때 證券去來委員會(SEC)는 不確實性의 주제로 복귀하였다. 여기에서 繼續企業監査報告를 받은 회사는

4) Rappaport, L.H., SEC Accounting Practice and Procedure, Third Edition, The Re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72.

1933년 證券法에 의해서 대중에게 證券을 공모하기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수용하였다. 그러나 일반대중이 登錄證券에 대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34년 證券法을 수용하여 繼續企業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繼續企業監查報告를 중요시한 첫 공식적 언급은 會計監查基準書(Statement on Accounting Standards : SAS) NO.2(1974)<sup>5)</sup>이다. 이 보고서는 회사가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監查人은 기록된 資産의 回收可能性과 負債의 分類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중요한 不確實性이 존재할 경우, 限定意見이나 意見拒絶을 고려하도록 監查人에게 요구하였다.

이상과 같은 專門機關의 입장(예, SAP NO.33, SAS NO.2)표명에도 불구하고, 監查人들은 繼續企業의 不確實性 공시에 대한 報告責任을 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監查人責任委員會(1978)는 不確實性에 대한 會計監查基準書(SAS) No.2의 보고요구에 대한 有用性에 의문을 갖고 있었으며, 條件附 限定意見을 없애자고 제안하였다. 그러한 提案理由는 條件附 限定意見에서 監查人은 不確實性의 報告者이자 解釋者가 되어야 하며 條件附라는 개념이 애매 모호하고, 또한 條件附 限定意見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가 不確實性에 직면해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委員會는 중대한 不確實性을 부각시키고 情報利用者들에게 不確實性의 評價와 미래의 營業活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不確實性에 대해 註釋事項을 새로 추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 委員會의 견해에 따르면, 회사가 營業活動의 繼續性에 대해 커다란 不確實性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監查報告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財務諸表를 修正 또는 公示에 의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委員會의 입장은 監查基準執行委員會(현재 監查基準審議委員會)에 의해 '不確實性 상황에서 監查報告書'란 표제를 가진 公開草案을 추진시켰다. 그 公開草案의 제안에 따라 不確實性은 FASB NO.5의 기준에 의해 공시한다면, 監查意見을 修正하거나 限定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公開草案에 참여한 정보이용자들의 반대에 따라 그 委員會의 公開草案에 대해 공식적 공표를 연기시키게 되었다.<sup>6)</sup>

1981년 3월에 「實體의 存續에 의문이 있을 때 監查人의 考慮事項」이라는 題目으로 會計監查基準書(SAS) No.34가 공표됨으로서, 기업의 繼續性에 의문이 있을 때 필요한 감사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監查人은 反對情報(contrary information)와 緩和要因(mitigating

5) AICPA "Reports o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SAS No.2, AICPA, 1974.

6) 같은 시기인 1978년에 캐나다勸許會計士會의 會計監查人役割特別委員會(일명 아담스위원회)에서도 不確實性의 보고는 經營者의 책임으로 모든 중대한 不確實성과 그 不確實성이 利益과 財務狀態에 미치는 영향을 註釋에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不確實性에 대한 條件附 限定意見은 삭제하도록 결정하였다.

factors) 모두를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요소를 고려한 후에도 의문이 남아 있을 때, 監査人は 기록된 資産의 回收可能性과 負債의 分類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監査節次를 통하여 存續의 假定에 반대되는 정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會計監査基準書(SAS)No. 34는 監査人에 대한 회사의 存續의 상태를 평가할 책임을 강요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企業失敗에 대한 초기 경고신호로서의 監査人の 제한된 역할에 대해 經濟界, 言論界, 學界, 및 議會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會計基準審議會(Accounting Standard Board : ASB)는 「繼續企業으로서 實體의 存續能力에 관한 監査人の 考慮事項」이란 題目으로 會計監査基準書(SAS) NO. 59(1988)를 공포하였다.

새로운 會計監査基準書(SAS)No. 59는 會計監査基準書(SAS)NO. 34를 대체하였으며, 다음 3가지 주요 관점에서 會計監査基準書NO. 34와는 다르다. 첫째, 會計監査基準書No. 34에서 監査人の 책임은 監査節次를 통하여 存續의 가정에 반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에 국한하였다. 반면에 會計監査基準書No. 59는 감사한 財務諸表日로부터 일년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 기간동안 繼續企業으로 존속할 實體의 능력에 실질적 의문여부를 평가하도록 監査人에게 요구하였다(즉, 제한적 책임보다 적극적 책임). 둘째, 會計監査基準書(SAS) No. 59는 資産의 回收可能性과 負債의 分類에 의문이 없더라도 監査人이 實體의 存續能力에 관한 실질적인 의문이 있을 때, 監査報告書를 수정하도록 監査人에게 요구하였다. 會計監査基準書(SAS) No. 34에서는 存續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이 있더라도 監査人에게 보고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資産의 回收可能性과 負債金額 및 分類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會計監査基準書(SAS) No. 59는 條件附限定意見を 삭제하고 適正報告書の 說明文段에 그것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條件附意見이 財務諸表 이용자들에게 오해를 준다는 審議委員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會計監査基準書(SAS) No. 59는 監査人이 기업의 存續能力에 대한 실질적 의문을 가질 때, 의문을 야기하는 환경을 說明文段에 부가하여 기술하고 適正意見を 줄 수 있도록 하였다.<sup>7)</sup>

이상과 같은 會計監査基準書(SAS) No. 34와 會計監査基準書(SAS) No. 59의 내용을 비교하면 <表1>과 같이 요약된다.<sup>8)</sup>

7) SAS No. 59에서 存續에 대한 실질적 의문때문에 수정한 보고서에 포함되는 說明文段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첨부된 財務諸表는 ABC회사가 繼續企業으로 존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되었다. 財務諸表 註釋 00과 같이 ABC회사는 營業損失이 누적되고 있으며 繼續企業으로서 회사의 存續能力에 실질적인 의문이 제기될 純資本이 부족하다. 이 문제에 대한 經營計劃은 註釋 00에서 기술되고 있다. 財務諸表는 不確實性的의 결과로 발생할 지도 모를 어떠한 수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8) Ellingsen, J. E., Pany K., and Fagan P., “SAS no. 59 : How to Evaluate Going Concern,”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1989), p. 25.

〈表 1〉 SAS No. 34와 SAS No. 59의 比較

	SAS No. 34	SAS No. 59
일반적 책임	繼續企業으로서 실체의 존속 능력이 감사에서 반대정보가 발견될 때만 고려함	繼續企業으로서 실체의 존속 능력을 모든 감사 과정에서 고려하고, 감사절차에 의해 얻어진 결과는 繼續企業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함
보고수정이 원인	자산회수와 부채분류가 의문시되는 경우	繼續企業으로서 존속할 수 없는 기업의 능력
보고에 필요한 의문의 정도	실 질 적	실 질 적
존속 기간	대략 일년	결산일에서 일년 이내
감사의견에의 영향	조건부 한정 의견	의견문단 다음의 설명 문단에 기술한 적정 의견

이와 같이 美國은 繼續企業의 존속능력에 대한 보고의 發展過程에서 監査人의 보고책임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개정 이전의 會計監査基準에서는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객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 監査意見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限定意見(제25조 제3항) 또는 意見拒絶(제27조 제1항)의 감사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유로는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손실, 運營資金의 격심한 부족,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지원의 두절, 借入金의 약정사항 불이행, 산업 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회사의 영향 등 複合的 不確實性으로 會計監査報告準則(제352조)에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監査人이 財務諸表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할 때, 經營者가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不確實性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규정(會計監査報告準則 354)하여 가급적 監査人의 책임을 경감시키려 했던 것이 특색이었다.

1991년 개정 이전의 會計監査基準에 따라, 1986-1991년동안 不確實性 사유에 따른 意見類型을 살펴 보면 <표 2>와 같다. 不確實性에 의한 限定意見 가운데 繼續企業의 不確實性을 사유로 限定意見을 표명한 회사는 287개 회사 중 125개로 44%에 해당되며, 不確實性에 의한 意見拒絶 가운데 繼續企業의 不確實性을 사유로 意見拒絶을 한 회사는 59개 회사 가운데 34개 회사로 59%에 해당된다. 그리고 년 평균 26여개의 회사에 대하여 繼續企業의 보고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監査人들은 繼續企業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많이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 不確實性에 의한 監査意見의 사유별 現況(전년 7월-당년 6월 결산회사)

不確實性 事由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計
<b>限定意見</b>	14(2)	17	19	23(1)	12	40(1)	125
繼續企業의 의문	13	20	8	12	16	12(2)	81
국세부과의 불복절차와 소송결과의 예측	8	6	5	5	15	24(8)	63
부실채권과 구상권청구 액의 회수가능성	3	6	—	3	3	3	1
기 타							
計	38(2)	49	32	43(1)	46	79(11)	287
<b>意見拒絶</b>							
繼續企業의 의문	12	1	4	3	—	14	34
기 타	3	3	3	4	6	6	25
計	15	4	7	7	6	20	59

\*. 괄호안은 上場會社の 경우를 나타냄.

〈資料源〉 證券監督院, 證券調査月報, 1987-1993년.

1991년 12월에 개정된 會計監査準則 가운데 立證監査節次(제354조 제7항), 特記事項(제416조 제2항), 그리고 不確實性 존재시 監査意見(제460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立證監査節次를 수행할 때, 감사실시과정에서 繼續企業으로서 존속여부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중요한 疑問事項을 확인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監査人は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여부만을 검토할 목적으로 별도의 監査節次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감사의 全過程에 걸쳐서 기업의 존속능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繼續企業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繼續企業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법보다 더 監査人の 책임범위를 강화시킨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監査基準書(SAS) No. 59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는 것<sup>9)</sup>으로 해석된다.

會計監査準則 제354조 제7항에서 회사존속에 대한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營業不振에 의한 缺損累積 및 運轉資本의 부족.
- ② 主要 財務比率의 악화, 借入條件의 불리한 변경, 主要 資産의 처분필요성 등 재무상

9) 삼일회계법인, 삼일감사론, 서울: 삼일회계법인, 1992, p. 879

어려움을 보여주는 諸般指標.

③ 操業中斷, 극심한 勞使紛糾 등으로 인한 內部管理問題.

④ 訴訟事件이나 災害의 발생, 關係法令의 改廢 등 영업능력을 위협하는 外部環境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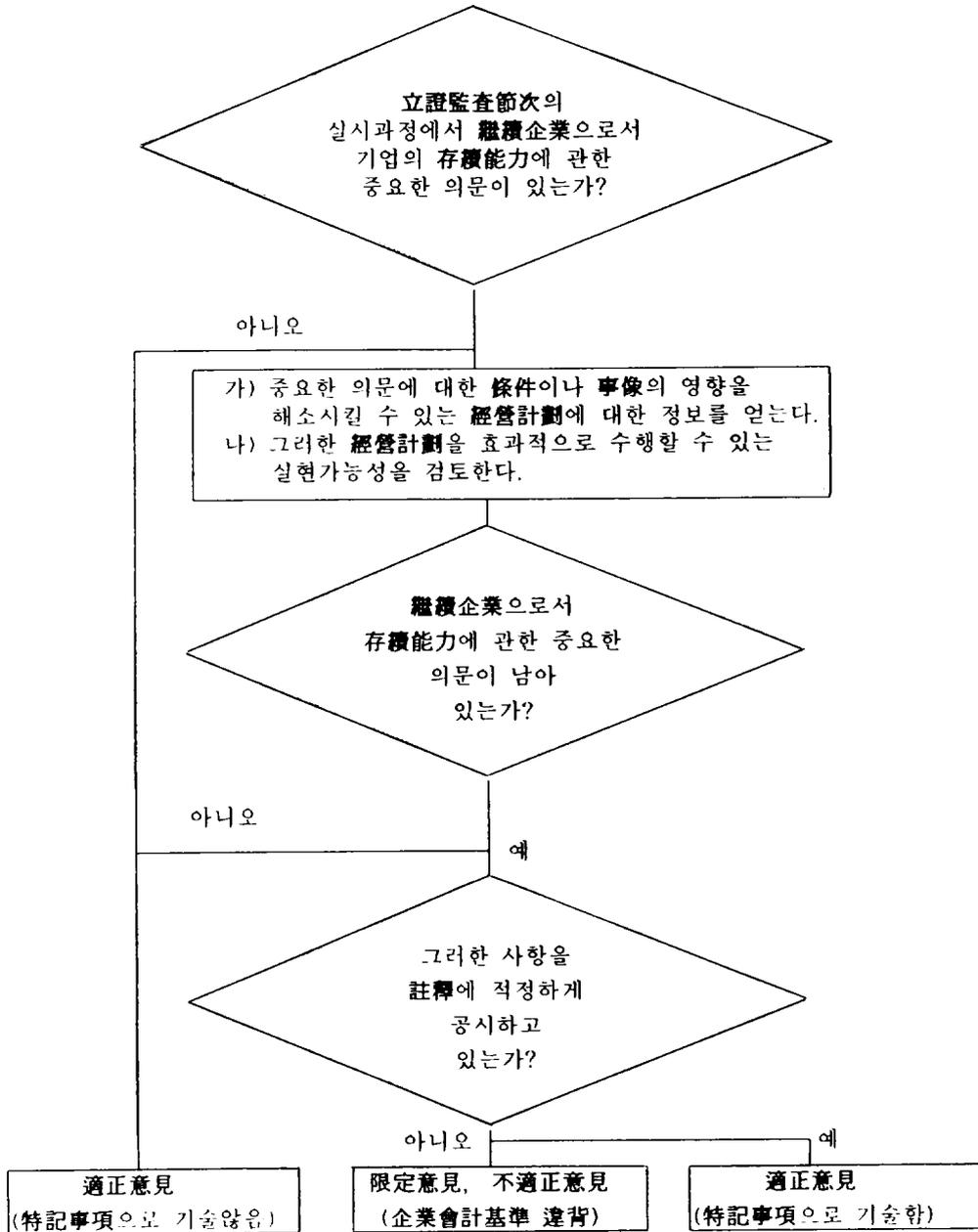
회사의 존속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문해소에 필요한 제반 經營計劃에 대한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經營計劃에는 ① 資産의 處分計劃, ② 追加借入이나 기존부채에 대한 借入條件의 수정을 위한 계획, ③ 資金節減計劃, 그리고 ④ 增資計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획을 평가한 후에도 기업의 존속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관한 註釋表示의 적정성 여부와 監查報告書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財務諸表 註釋으로 적절히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企業會計基準의 위배로 보아 이에 적합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不確實性이 註釋에 적절하게 공시되었으면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監查意見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監查報告書에 이를 特記事項으로만 기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10)</sup>

會計監查基準에서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능력에 관한 監查人의 고려사항을 흐름도로 요약하면 <그림1>과 같다.

繼續企業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監查人의 보고책임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繼續企業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미와 존속기간 및 중요한 의문에 대한 판단기준을 會計監查基準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감사실무에서 監查人의 판단상 혼란은 물론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監查人의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여부는 영업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중요한 매각이나 기업의 재조직 등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기업의 존속기간범위와 監查人의 예측능력한계에 대한 책임여부 등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0) 이효익, 현대회계감사론, 서울: 무역경영사, 1994, p. 526

<그림1> 繼續企業으로서 기업의 存續能力에 대한 監査人の 考慮事項



### Ⅲ. 繼續企業報告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 分析

본 章에서는 繼續企業의 존속 여부에 대한 判斷과 報告決定에 필요한 고려사항, 그리고 繼續企業의 報告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를 분석한다.

繼續企業으로서 존속 여부의 검토에 필요한 考慮事項으로서, ① 중요한 疑問事項 및 疑問解消事項의 내용, ② 繼續企業의 失敗時點(終了狀況과 存續期間)이 있는데, 이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를 조사한다.

아울러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대한 報告決定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다음 요인들이 있다. 會計法人 内部 및 外部의 統制方法(審理 또는 監理制度)에 따른 監査의 질적 管理制度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 그리고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特記事項의 기술 여부가 被監査人, 投資者와 債權者, 同僚監査人 등에 대한 인지태도이다. 그리고 이들 상호간 이해관계의 調整과 報告責任은 報告決定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에 대한 네 가지 狀況에서 監査人の 認知態度를 규명한다.

#### 1. 疑問事項과 疑問解消事項

1991년 12월에 개정된 會計監査基準에서는 立證監査節次(제354조 7항)를 수행할 때, 繼續企業으로서 존속 여부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疑問事項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 ① 營業不振에 의한 缺損累積 및 運轉資本의 不足
  - ② 주요 財務比率의 惡化, 借入條件의 불리한 變更, 주요 資産의 處分 必要性 등 재무상 어려움을 보여주는 諸般 指標
  - ③ 操業中斷, 극심한 勞使紛糾 등으로 인한 内部管理 問題
  - ④ 訴訟事件이나 災害의 發生, 關係法令의 改廢 등 營業能力을 위협하는 外部環境 問題
- 疑問事項을 검토한 후, 회사의 존속 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문해소에 필요한 제반 經營計劃에 대한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경영계획에는 ① 資産의 處分計劃, ② 追加借入이나 既存負債에 대한 借入條件의 수정을 위한 計劃, ③ 資金節減計劃, ④ 增資計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획을 평가한 후에도 기업의 존속 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관한 註釋表示의 適正性 여부와 監査報告書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財務諸表 註釋으로 적절히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企業會計基準의 違背로 보아 이에 적합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그러한 불확실성이 註釋에 적절하게 공시되었으면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監査意見을 제한하지 않고 監査報告書에 이를 特記事項으로만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疑問事項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設問結果는 <表3>과 같다. 그 결과 營業不振에 의한 결손누적, 借入金償還과 이자지급의 어려움, 運轉資本의 부족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항도 11명의 監査人이 기술하였는데, 營業展望, 經營者와 대주주의 성실성과 경영의지 등 계속기업의 의문을 갖게 하는 부가적 요소로 보았다.

<表 3> 중요한 疑問事項의 記述統計

疑 問 事 項	頻度數	比率 (%)
① 營業不振에 의한 缺損累積	151	29.78
② 借入金償還과 이자지급의 어려움	134	26.43
③ 運轉資本不足의 정도	104	20.51
④ 주요 財務比率의 惡化	21	4.14
⑤ 借入條件의 불리한 變更	15	2.96
⑥ 주요 資産의 處分 必要性	8	1.58
⑦ 內部管理상 問題(조업중단, 노사분규 등)	33	6.51
⑧ 外部環境要因의 威脅(소송, 재해, 관계법령의 개폐 등)	30	5.92
⑨ 기타 사항	11	2.17
合 計	507	

疑問解消事項에 대해서는 監査人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사항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表4>의 결과와 같이, 증가계획, 자산의 처분계획, 추가차입계획 등 자본조달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시 여기고 있다.

<表 4> 중요한 疑問解消事項의 記述統計

疑 問 解 消 事 項	頻度數	比率 (%)
① 資産의 處分計劃	87	25.66
② 追加借入計劃	48	14.16
③ 資金節減計劃	25	7.37
④ 既存負債의 借入條件의 유리한 變更	31	9.14
⑤ 增資計劃	118	34.81
⑥ 기타 사항	30	8.85
合 計	339	

그런데 疑問解消事項에 대한 기타 사항 기술에서 監査인들이 특히 두드러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곧 30명의 많은 監査인들이 기타사항에 기술하였는데, 그 가운데 26명이 “업계 및 기업상황을 고려한 미래의 營業展望”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차후 營業전망, 營業신장, 외형신장, 업종의 장래성, 판매계획, 매출액 증대가능성, 營業호전가능성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그리고 경영자와 대주주의 성실성, 경영의지, 및 자금동원능력에 대해서도 5명의 監査인이 기타 사항으로 기술(이중으로 기술한 監査인도 있음)하고 있어 부가적인 요소로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會計監査基準에는 주로 자본조달과 관련된 재무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이외에 營業전망 등의 營業적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2. 繼續企業의 失敗時點

繼續企業이 종료되는 시점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① 不渡時 103명, ② 法定管理申請時 21명, ③ 債權者에 의한 清算申請時 19명, ④ 法院에 의한 破産宣告時 19명, ⑤ 기업의 解散時 12명, ⑥ 기타 사항 4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종료되는 시점을 대부분 監査인들이 不渡時點으로 보고 있으며, 이 때는 특히 정상적인 營業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되는 상황 또는 營業停止狀態가 부가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기업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때 繼續企業으로서 存續期間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판단하느냐는 질문에서는 ① 6월 이내 0명, ② 1년 이내 30명, ③ 대략 1년정도 94명, ④ 2년 이내 40명으로 나타났다. 많은 監査인들이 존속기간을 대략 1년정도로 보고 있지만, 2년이내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監査인도 다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會計監査基準에 繼續企業의 終了狀況에 대한 의미와 存續期間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기업의 종료상황과 존속기간이 모호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會計監査基準의 改正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 3. 報告決定時 影響을 미치는 監査證據 이외의 要因

繼續企業의 報告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監査인의 認知態도로써 네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監査인의 認知態도를 분석하였는데, 부적절한 보고결과의 책임에 대한 상황과 문제회사에 대해 계속기업의 보고 여부에 따른 상황이다.

처음 두 가지 狀況은 잘못된 보고결과의 責任에 대한 監査인의 認知態度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被監査會社에 대해 繼續企業으로서의 중요한 疑問事項을 監査報告書의 特記事項으로 보고 했는데 나중에 繼續企業으로 존속한 경우, 그리고 特記事項으로 보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監査人の 책임에 대한 認知態度를 조사하였다.

다음 두 가지 狀況은 繼續企業의 存續能力에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監査人の 報告責任과 갈등에 대한 認知態度이다. 다시 말하면, 監査人이 繼續企業의 존속 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는 회사에 대해 特記事項으로 보고할 경우, 그리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監査人の 갈등에 대한 認知態度를 조사하였다.

### 1) 繼續企業의 報告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

여기서는 繼續企業의 報告에 대한 監査人の 개인적 태도를 평가하는데 목표를 둔 여러가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에 대한 해명이 社會心理學(Fishbein & Coombs 1974)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정보처리과정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監査人の 態度를 조사한 이론 및 경험적 회계분야의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구노력이 빈약한 측면도 있지만, 繼續企業의 報告에 대한 감사인의 태도와 계속기업의 보고관계를 제시한 Kida(1980)의 초기연구는 그 이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繼續企業의 報告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감사인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나 繼續企業의 報告를 위한 判斷基準에서 매우 높은 판단역을 가진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繼續企業의 報告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社會心理學에서 태도 개념은 오래전부터 인간행위의 설명에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대부분의 社會心理學者들의 정의에 따르면, 態度는 특정 행위의 준비상태, 즉 어떤 대상, 사람, 제도 또는 사건(events)에 대해(어떤 자극에 직면할 때) 특정 방식(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으로 행동 또는 반응하는 성향이라고 한다. 그 태도가 지각될 때만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態度(attitude)는 일반적으로 感情(affect), 認知(cognition), 行爲(conation)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은 準據集團으로부터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의 정서적 구성요소이다. 認知構成要素는 개인적 신념, 의견 및 인식으로 언급되는데 즉 개인이 어떤 대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평가된 신념(evaluative beliefs)이다. 行爲의 성격에 대한 반응은 태도대상에 대한 행동적인 경향과 행위를 말한다(Ajzen 1988). 態度는 인지적 구성요소인 신념에 의해 강화되고, 정서적 구성요소인 강한 감정을 수반하며, 이러한 감정은 특정 행동형태의 원인이 된다.<sup>11)</sup> 그러한 태도는 주요 속성 가운데 하나가 강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11) 이철원 역, 설문지 디자인과 태도측정, 한터, 1993, pp.139-146. (Oppenheim, A. N., Questionnaire Design and Attitude Measurement).

일반적으로 態度는 의미상으로 차별성이 가장 잘 알려진 다항목 척도에 의해 측정된다 (Osgood, Suci and Tannenbaum 1957). 태도의 측정치와 같이 의미상 차별성은 “동의 - 동의 하지 않음”, “좋음 - 나쁨”과 같이 일련의 양극평가의 수식적인 쌍으로 구성된다. 각 수식적 쌍은 7점척도를 서로 반대쪽 끝에 위치하게 하여 응답자에게 태도 대상의 평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척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일항목 측정치가 태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지만, 이러한 접근법의 주된 문제점은 동일한 태도의 반복된 평가에 따른 신뢰성의 결여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항목수가 크면 클수록 태도 점수에 대해 더 큰 신뢰성을 갖는다.

의미상 차별성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에서 합성점수는 응답자 태도의 측정치로 사용된다. 이러한 態度는 고려 중인 태도에 적합하게 명백한 행위를 미리 처치함을 가정한다. 이와 같이 의미상 차별성에 관한 監査人の 점수는 繼續企業의 報告를 행할 성향이나 判斷역평가를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태도가 고려 중인 태도에 적합한 행동만을 예측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만일 繼續企業의 報告를 하기 위한 判斷基準의 평가나 繼續企業의 報告를 하는데 있어서 監査人の 성향을 예측하려고 한다면, 적절한 태도측정치는 繼續企業의 報告를 행하는데 대한 認知態度를 監査人에게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繼續企業의 報告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監査人에게 特記事項으로 보고(보고하지 않음)한 경우 잠재적 영향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그들이 동의(매우 그렇다)하거나 동의하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7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표시하도록 만들었다. 그 척도에서 낮은 점수는 繼續企業의 報告에 대한 認知態度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도록 하고 그와 반대로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도록 배열되었다.

의미상 차별적 척도에 대한 被驗者의 반응을 사용함으로써(여기서의 분석은 후속적으로 존속한 被監査會社에 대한 繼續企業의 報告를 한 경우와 후속적으로 실패한 회사에 대해 繼續企業의 報告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설문지 제3부에서 (1)과 (2)의 반응만을 포함), 그 합성태도 측정치는 13가지 질문에 대한 각 피험자의 반응을 합제한 것이다. 낮은 태도의 점수일수록 높은 判斷基準을 보일 것이라는 것으로서 태도측정치는 被驗者의 判斷基準과 負의 相關關係를 조사하였는데 유의성은 없었지만(Spearman의 相關關係:  $r = -0.06116$ ), 예상대로 그 방향은 負의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우선 監査人の 特記事項으로 보고에 대한 認知態度를 살펴보면 <表 5>와 같다.

첫째 상황은 특정 被監査會社에 대해 繼續企業으로서 중요한 疑問事項을 監査報告書의 特記事項에 보고했는데 나중에 繼續企業으로 존속한 경우의 결과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를 조사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被監査人을 상실할 것이라는데 被驗者 75%가 동의하고 있다. 또한, 被監査會社가 자금조달 능력의 상실, 고객 및 공급처와의 신용을 잃게 되므로 결국에 가서는 파산할 것이라는 자기예언의 실현에 대해서는 被驗者의 69%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절한 보고로 被監査會社에 의해 會計法人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데는 被驗者 65%가 동의하지 않았다. 전체 公認會計士들에 대한 사회적 명성의 실추와 외부규제기관의 규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기업사회에서 會計法人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는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결과는 후속적으로 존속한 회사에 대해 繼續企業의 報告를 하였을 경우 고객을 상실할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被監査會社는 결국 파산할 것이라는 자기예언의 실현에 동의하고 있어 파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에 繼續企業의 報告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적절한 繼續企業의 報告 結果에 의해 소송제기, 기업사회에서의 부정적인 평판, 규제기관의 규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의 둘째 상황은 특정 被監査會社에 대해 繼續企業으로서의 중요한 疑問事項을 監査人이 監査報告書에 特記事項으로 보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인지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被監査會社의 債權者와 投資家에 의해 會計法人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부적절한 보고가 부실감사라는 근거를 제공하고, 기업사회에서 會計法人의 名聲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專門監査人으로서 정당한 주의의무 책임, 동료 公認會計士들의 사회적 명예실추, 그리고 외부규제기관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繼續企業의 報告를 하지 않았는데 후속적으로 被監査會社가 실패한 경우, 그 결과는 소송의 제기, 부실감사, 회계법인 및 동료감사인의 명예의 실추, 규제기관의 규제강화 등 監査人の 認知態度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적절하게 繼續企業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認知態度는 후속적으로 존속하는 때보다 실패한 때 보고결과의 책임에 강한 認知態度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5〉 繼續企業의 報告에 대한 監査人の 認知態度

	동의함(%)	동의않음(%)	平均	標準偏差
가) 첫째 상황: 보고/존속				
顧客喪失	0.75	0.16	2.55	1.63
訴訟提起	0.20	0.65	4.91	1.71
企業社會에서 명예실추	0.46	0.47	4.01	1.94
自己豫言의 실현	0.69	0.20	2.99	1.64
同僚監査人の 명예실추	0.30	0.62	4.80	1.80
規制機關의 규제강화	0.25	0.59	4.70	1.78
나) 둘째 상황: 보고않음/실패				
訴訟提起	0.81	0.10	2.43	1.42
不實監査 근거	0.80	0.12	2.62	1.42
企業社會에서 명예실추	0.80	0.12	2.62	1.44
注意義務의 책임	0.75	0.19	2.87	1.58
문제해결 노력기회제공	0.62	0.26	3.41	1.68
同僚監査人の 명예실추	0.76	0.15	2.80	1.49
規制機關의 규제강화	0.83	0.03	2.36	1.29
다) 셋째 상황: 문제회사/보고				
報告書의 신뢰성중대	0.75	0.01	1.86	0.96
적절한 意見表明	0.89	0.02	2.02	1.03
監査人の 책임이행	0.89	0.03	2.00	1.04
繼續企業問題의 악화	0.71	0.16	2.77	1.51
被監査人과의 관계악화	0.84	0.06	2.19	1.29
特記事項의 내용조정	0.71	0.11	2.95	1.35
라) 넷째 상황: 문제회사/보고않음				
불리한 여론방지	0.29	0.50	4.25	2.00
報告書의 신뢰성악화	0.79	0.14	2.82	1.50
被監査人과의 관계유지	0.79	0.10	2.89	1.27
法人의 명예실추	0.68	0.16	3.10	1.44
利害關係者의 우려방지	0.40	0.47	4.27	1.71
監理機關의 지적	0.85	0.08	2.51	1.24

주1) 7점척도에서 각 항목에 동의함(1-3점까지)은 그 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1점), "약간 그렇다" (3점)로 표시하도록 한 척도이며, 동의않음(5-7점까지)은 "약간 그렇지 않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로 표시하도록 한 척도임.

설문의 셋째 상황은 監査人이 繼續企業의 존속 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는 회사에 대해 特記事項으로 보고할 경우의 認知態度를 질문하였는데, 意思決定 時點에서의 認知態度로서 첫 설문의 부분과 다르다. 債權者와 투자자들에게 被監査會社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경고함으로써 利害關係者들에게 감사보고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被監査會社의 繼續企業 問題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킴, 적절한 보고, 사회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이행, 被監査會社와의 관계악화, 被監査會

社와의 갈등을 고려하여 特記事項의 內容을 조정하여 보고함 모두에 대해 강한 동의를 하고 있다.

繼續企業의 중요한 疑問事項이 있을 때 特記事項으로 보고할 경우, 감사보고의 신뢰성을 증대, 적절한 의견표명, 사회에 대한 책임이행, 계속기업 문제의 악화,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악화, 피감사와의 관계의 악화와 갈등에 의한 特記事項의 內容調整 모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넷째 상황은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문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特記事項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의사결정 시점에서 監査人の 認知態度로서 두 번째 설문과는 다르다.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이 악화,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악화의 방지, 회계법인의 사회적 명성의 실추, 외부감리기관에 의한 지적가능성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방지한다는 데는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特記事項에 繼續企業의 疑問事項을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태도를 질문한 것으로, 중요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繼續企業의 疑問事項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감사보고의 신뢰성문제, 명성의 실추, 감리기관의 규제 등 문제가 있음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또한 被監査會社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繼續企業의 疑問事項을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表6>은 特記事項으로 보고한 監査인과 보고하지 않은 監査人の 認知態度를 비교한 것이다. Wilcoxon검정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認知態度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후속적으로 존속한 기업에 대해 繼續企業의 疑問事項을 보고한 경우, 繼續企業의 報告를 하지 않은 監査인은 보고를 한 監査인보다 고객의 상실과 기업사회에서의 명예실추의 상황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 더 강한 신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繼續企業의 報告를 할 경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보기 때문에 繼續企業의 報告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監査人の 책임에 따라 繼續企業의 報告에 관한 認知態度를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繼續企業으로서 중요한 의문이 있는 문제회사에 대해 繼續企業의 보고를 할 경우, 責任監査인이 現場監査인보다 보고서의 신뢰성 증대, 적절한 의견표명 및 감사인의 책임이행에 대한 상황에 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보고에서 會計法人間에는 이상 네 가지 각 상황에 대해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表 6〉 特記事項으로 보고한 監査人과 보고하지 않은 監査人の 認知態度

	보고한 監査人	보고않은 監査人	Wilcoxon Z (p)
가) 첫째 상황: 報告/存續			
顧客喪失	2.77	2.28	-1.56 (0.12)
訴訟提起	5.09	4.69	-1.46 (0.14)
企業社會에서 명예실추	4.26	3.71	-1.88 (0.06)
自己豫言의 實現	3.00	2.89	-0.08 (0.93)
同僚監査人の 명예실추	4.88	4.59	-1.71 (0.09)
規制機關의 規制強化	4.80	4.51	-1.34 (0.18)
나) 둘째 상황: 報告않음/失敗			
訴訟提起	2.32	2.57	1.39 (0.16)
不實監査 근거	2.47	2.81	1.56 (0.12)
企業社會에서 명예실추	2.47	2.81	1.61 (0.11)
注意義務의 責任	2.75	3.03	1.01 (0.31)
문제해결 노력기회 제공	3.51	3.28	-0.88 (0.38)
同僚監査人の 명예실추	2.66	2.97	1.42 (0.16)
規制機關의 規制強化	2.32	2.41	0.53 (0.60)
다) 셋째 상황: 問題會社/報告			
報告書의 신뢰성 증대	1.87	1.85	0.66 (0.51)
적절한 意見表明	2.02	2.01	-0.30 (0.77)
監査人の 책임이행	2.00	2.00	0.09 (0.92)
繼續企業問題의 惡化	2.88	2.63	-0.99 (0.32)
被監査人과의 關係惡化	2.20	2.17	-0.08 (0.94)
特記事項의 內容調整	3.12	2.75	-1.20 (0.23)
라) 넷째 상황: 問題會社/報告않음			
불리한 여론방지	4.30	4.17	-0.52 (0.60)
報告書의 신뢰성 악화	2.79	2.85	0.78 (0.44)
被監査人과의 關係유지	3.02	2.72	-1.43 (0.15)
法人의 명예실추	2.90	3.33	2.27 (0.02)
利害關係者의 우려방지	4.37	4.15	-0.70 (0.49)
監理機關의 지적	2.53	2.49	0.53 (0.60)

주 1) 7점척도에서 각 항목에 동의함(1-3점까지)은 그 강도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1점), "약간 그렇다" (3점)로 표시하도록 한 척도이며, 동의않음(5-7점까지)은 "약간 그렇지 않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로 표시하도록 한 척도임.

## 2) 意見決定에 대한 報告責任과 利害關係의 葛藤

繼續企業 問題를 特記事項으로 기술할지 여부에 대한 判斷과 報告決定을 할 때 利害關係者와 의 상충적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責任監査人 集團은 70.7%(65명), 現場監査人集團은 29.3%(22명)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責任監査人 集團에서 갈등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繼續企業 問題를 特記事項으로 기술할 때 被監査會社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特記事項의 內容을 조정할 경험은 묻는

질문에서 責任監査人 集團이 48.9%(45명), 現場監査人 集團이 20%(15명)로 나타나 내용조정을 통하여 被監査會社와의 갈등을 처리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정방법으로써 문구 수정 또는 표현방법상의 문제 등으로 부가적인 기술을 한 감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조정이 용이한 이유는 會計監査基準에 규정된 내용이 모호하여 책임관계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表 7> 繼續企業의 報告時 報告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

内 容 位	1	2	3	4	5		
가) 監査業務의 質的 管理制度							
① 法人内 직속상사의 統制	61	30	12	41	2		
② 法人内部審理	16	50	59	19	2		
③ 公認會計士會의 審理	3	32	39	61	5		
④ 證券監督院의 監理	72	28	30	18	1		
⑤ 기 타	11	1	1	0	154		
나) 利害關係者와의 葛藤							
① 被監査人	72	37	31	8	0		
② 投資家 및 債權者	57	40	33	19	0		
③ 同僚監査人	10	19	33	76	0		
④ 證券監督院의 監理機關	23	43	41	31	1		
⑤ 기 타	2	0	0	0	165		
<b>Duncan Grouping</b>							
監査業務의 質的 管理制度			利害關係者와의 葛藤				
	平均	標本	項目	平均	標本	項目	
A	2.713	167	③	A	2.701	167	③
B	2.269	167	②	B	2.162	167	④
C B	1.982	167	①	C	1.868	167	②
C	1.766	167	④	C	1.623	167	①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중요한 疑問事項을 監査報告書에 特記事項으로 보고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監査人이 意思決定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대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表7>과 같다.

監査業務의 質的 管理制度와 관련하여 繼續企業의 報告時 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각 항목의 順位平均에 의한 分散分析의 結果는 항목별 차이가 1%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F=15.72). 항목별 Duncan Grouping검정 결과에 의하면, <表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監査業務의 質的 管理制度와 관련하여 繼續企業의 報告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로서 證券監督院의 監理, 법인내의 직속상사의 통제가 가장 크며, 그 다음 법인 내의 내부심리를 들 수 있다. 또한 13명의 監査人이 기타사항에 기술한 내용을 보면, 擔當公認會計士 본인의 책임하

에 판단한다는 경우(3명)가 특이한 경우였으며, 그의 잠재적 소송위험,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利害關係者와의 葛藤과 관련하여 繼續企業의 報告時 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각 항목의 順位平均에 의한 分散分析의 結果는 항목별 차이가 1%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F=21.53$ ). 항목별 Duncan Grouping의 결과에 의하면, <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利害關係者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繼續企業의 報告時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로서 被監查人과 投資家 및 債權者와의 關係에서 가장 큰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가 상충이 되는 集團 사이에서 監查人은 報告決定에 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繼續企業의 報告時 被監查人과 投資家 및 債權者 양자간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특기사항으로 기술하여 보고는 하되 그 내용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내용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타사항에서 종업원을 기술한 감사인도 2명이 있었다.

#### IV. 結 論

繼續企業의 존속 여부에 대한 判斷과 報告決定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① 중요한 疑問事項 및 疑問解消事項의 내용, ② 繼續企業의 失敗時點 등이다. 이에 대한 監查人의 認知態度를 조사하였는데,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監查人들이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疑問事項은 營業不振에 의한 缺損累積, 借入金의 상환과 利子支給의 어려움, 運轉資本의 부족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營業活動의 부진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繼續企業으로서 존속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財務的 失敗要因이라 생각되며, 기타 사항으로 기술한 營業展望, 經營者와 大株主의 성실성과 經營意志問題는 營業的 失敗要因으로서 계속기업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가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둘째, 監查人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疑問解消事項은 增資計劃, 資産의 處分計劃, 追加借入計劃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資本調達과 관련된 사항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疑問解消事項에 대한 기타 사항의 기술에서 많은 監查人들이 특히 두드러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業界 및 企業狀況을 고려한 미래의 營業展望', 그리고 그와 유사한 표현(차후 영업전망, 영업신장, 외형신장, 업종의 장래성, 판매계획, 매출액 증대가능성, 영업호전가능성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經營者와 大株主의 誠實性, 經營意志, 및 資金動員能力 등도 부가적인 요소로 주목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會計監查基準에는 주로 資本調達과 관련된 財務的 事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외에 營業展望 등 營業的 事項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繼續企業의 失敗時點 狀況은 대부분 監査인들이 不渡時點으로 보고 있다. 그 때는 특히 정상적인 營業活動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 또는 영업정지상태가 부가된 경우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때 繼續企業으로서 존속기간은 많은 監査인들이 존속기간을 대략 1년 정도로 보았지만, 2년 이내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監査인도 다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속기업의 실패시점 상황과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會計監査基準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繼續企業의 실패상황과 존속기간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감사인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會計監査基準의 규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또한 繼續企業의 報告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네 가지 상황에서 監査人の 認知態度를 분석하였는데 감사인의 개인적 태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부적절한 繼續企業의 報告結果에 대한 監査人の 책임에 대한 認知態度

① 繼續企業의 疑問事項을 特記事項으로 보고했는데 나중에 회사가 존속된 경우; 고객을 상실할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被監査會社는 결국 파산할 것이라는 自己豫言의 實現에 동의하고 있어 기업의 破産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에 特記事項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후속적으로 존속한 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特記事項 記述에 의해 訴訟提起, 企業社會에서 부정적인 평판, 規制機關의 규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는 監査인이 不實企業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기술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財務的 危險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情報利用者에게 特記事項 記述의 방법으로 적절히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기본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特記事項으로 보고하지 않았는데 후속적으로 被監査會社가 失敗한 경우; 그 결과는 소송의 제기, 不實監査, 會計法人 및 同僚監査人の 명예실추, 規制機關의 규제강화 등 監査人の 認知態度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적절하게 特記事項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認知態度는 후속적으로 존속할 때보다 후속적으로 실패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 강한 認知態度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무적 危險을 간과한 것은 監査人の 會計監査基準에서 정하고 있는 신중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나) 繼續企業의 존속 여부에 대한 報告決定時 갈등에 대한 認知態度

① 繼續企業의 중요한 疑問事項이 있을 때 特記事項으로 보고할 경우; 監査報告의 신뢰성

증대, 적절한 의견표명, 사회에 대한 책임이행, 繼續企業 問題의 악화, 被監查會社와의 관계악화 및 갈등에 의한 特記事項의 內容調整 모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② 特記事項으로 보고를 해야하는데 보고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特記事項으로 기술하지 않을 경우에 감사보고의 신뢰성문제, 명예의 실추, 감리기관의 규제 등 문제가 있음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被監查會社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속기업의 의문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다) 監查人의 認知態度 比較

特記事項으로 보고한 監查인과 보고하지 않은 監查人の 認知態度를 비교한 결과 다음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認知態度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特記事項으로 기술하였는데 후속적으로 존속한 기업의 질문상황에서, 特記事項으로 기술하지 않은 監查인은 기술한 監查人보다 고객상실과 기업사회에서의 명예실추 상황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特記事項으로 기술할 경우 고객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特記事項으로 기술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인의 책임에 따라 認知態度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상황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繼續企業으로서 중요한 의문이 있는 문제회사에 대해 特記事項으로 기술할 경우, 責任監查人이 現場監查人보다 보고서의 신뢰성 증대, 적절한 의견표명, 및 감사인의 책임이행에 대한 상황에 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 가지 상황에서 會計法人間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監查人이 特記事項으로 기술할지 여부에 대한 判斷과 報告決定을 할 때 利害關係者와의 상충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경험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責任監查人集團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繼續企業 問題를 特記事項으로 기술할 때 被監查會社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特記事項의 내용조정을 통하여 被監查會社와의 갈등을 처리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調整方法으로는 문구수정 또는 표현방법상의 문제 등을 부가적으로 기술한 監查인들이 있었다. 내용조정이 이렇게 용이한 이유는 會計監查基準에 규정된 내용에 책임관계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라) 報告責任과 葛藤要因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대한 報告決定을 할 때 다음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會計法人 内部 및 外部의 統制方法(審理 또는 監理制度)에 의한 監查의 質的 管理制度, 被監

査人, 投資者와 債權者, 同僚監査人 등이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해 特記事項으로 기술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利害關係者 상호간 이해관계의 調整과 報告責任 때문에 報告決定時 보고 여부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된다.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중요한 疑問事項을 監査報告書에 特記事項으로 보고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報告責任과 利害關係者와의 갈등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사업무의 질적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特記事項으로 記述與否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로서 證券監督院의 監理와 법인 내 직속상사의 統制가 가장 컸다. 그 다음 법인 내의 内部審理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사항에 기술한 내용으로서 담당공인회계사 본인의 책임하에 판단한다는 사례가 특이한 경우였다. 그외 잠재적 訴訟危險, 損害賠償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그리고 利害關係者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特記事項의 기술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被監査인과 投資家 및 債權者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가 상충되는 두 集團 사이에서 監査인은 報告決定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特記事項으로 기술할 때 被監査인과 投資家 및 債權者 양자간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特記事項으로 기술은 하되, 그 내용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내용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들은 우리나라 會計監査基準에서 규정된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관한 내용, 중요한 의문, 그리고 실패시점 및 상황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감사실무상 判斷과 報告決定에 많은 혼란과 利害關係者와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이러한 분석결과는 監査人の 報告決定과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고성효, "감사인의 계속기업보고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7집,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1993.
- 고성효, "Einhorn & Hogarth모델이 감사인판단과 의사결정에서의 적용," 사회발전연구 제9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993.
- 박오수 역, 사회인지론, 법문사, 1992, "S. T. Fiske and S. E. Taylor, Social Cognition, Addison-Wesley, 1984".
- 삼일회계법인, 삼일감사론, 서울: 삼일회계법인, 1992.
- 이성호, "회계행위연구의 현주소와 향후의 연구방향," 회계학연구 제14호, 한국회계학회, 1992. 7.
- 이만우, "실험연구방법에 의한 회계감사연구의 흐름," 회계학연구 제17호, 한국회계학회, 1993. 12.
- 이영애 역, 인지심리학, 을유문화사, 1992. "J. R. Anderso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 1980".
- 이철원 역, 설문지 디자인과 태도측정, 한터, 1993, "A. N. Oppenheim, Questionnaire Design and Attitude Measurement".
- 한규석, 박상철 공역, 인간의 추론: 판단방략과 그 결함, 성원사, 1991. "R. Nisbett and L. Ross,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ement, Prentice-Hall".
- AICPA, Reports o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SAS No.2, AICPA, 1974.
- \_\_\_\_\_, The Auditors Consideration of an Entity's Ability to Continue as a Going Concern, SAS No.59, AICPA, (April 1988).
- \_\_\_\_\_, The Auditor's Consideration When a Question Arises about an Entity's Continued Existence, SAS No.34, AICPA, (March 1981).
- \_\_\_\_\_, Statement on Auditing Procedures No.33, AICPA, (1963).
- Altman, E. I. and McGough, T., "Evaluation of a Company as a Going Concern," Journal of Accountancy, December 1974: 51-57.
- Asare, S. K., The Auditors, Going Concern Opinion Decision: A Review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rch, Working Paper, University of Florida, (January 1990).

- \_\_\_\_\_, "The Auditors, Going Concern Opinion Decision : Intertaction of Task Variables and the Sequential Processing of Evidence," *Accounting Review* Vol.67 (April 1992) an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1989)
- Ashton, R. H., Kleinmuntz, D. N., Sullivan, J. B. and L. A. Tomassini, L. A., "Audit Decison Making," ed. AAA, *Research Opportunities Auditing : The Second Decade* (1988).
- Birnberg, J. G., and Shields, J. F., "Three Decade of Behavioral Accounting Research: A search for Order, *BAR* (1989).
- Einhorn, H. J. and Hogarth, R. H., "Behavioral Decision Theory : Processes of Judgement and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81).
- Ellingsen, J. E., Pany K., and Fagan P., "SAS no.59 : How to Evaluate Going Concern,"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1989), pp.24-31.
- Hogarth, R. M., *Judgement and Choice*, (John Wiley and Sons, 1980).
- \_\_\_\_\_, "A Perspective on Cognitive Research in Auditing,"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91), pp.277-290.
- Johnson, P. E., Jamal, K. and Berryman, R. G., *Audit Judgement Research,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14 (1989)
- Kida, T., "An Investigation into Auditor's Continuity and Related Qualification Judg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80).
- Lewis, B., "Expert Judgement in Auditing : An Expected Utility Approach,"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75, pp.150-161.
- Libby R., *Accounting and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 Theory and Applications*, (Prentice-Hall, 1981).
- Messier Jr., W. F., Quilliam, W. C., "The Effect of Accountability on Judgement : Development of Hypotheses for Auditing," *Auditing : A Jounal of Practice & Theory*, Vol.11 Supplement, 1993.
- Rappaport, L. H., *SEC Accounting Practice and Procedure*, Third Edition, The Re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72.
- Shanteau, J., "Cognitive Heuristic and Biases in Behavioral Auditing : Review, Comments, and Observation,"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1989).
- Tetlock, P. E., "Accountability and the Perserverance of First Impress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December 1983).